해양수산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3. 2. 1.(수) 조간 2023. 1. 31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3. 1. 31.(화) 06:00
담당 부서	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	책임자	심판관 황종현 (044-200-6110)
		담당자	사무관 김원순 (044-200-6115)

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, 해양사고심판에서 활약한다.

- 사회·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해양사고 변론 지원 -
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(원장 강용석)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을 선정하여 2월 1일(수) 발표하였다.

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, 해당 학과 교수, 관련 공무원, 법조계 인사 등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. 주요 경력은 변호사(47명), 해기사(13명), 전·현직 조사·심판관(37명), 관련학과 교수(4명)이다.

최근 5년간 증가추이*를 살펴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 100명이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.

* ('19) 92명→ ('20) 92명→ ('21) 95명→ ('22) 98명→ ('23) 101명

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판이 열릴 때 사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* 국가가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.

*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, 청각 및 언어장애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수급권자인 경우 등 붙임 참고

국선 심판변론인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임된다. 수당은 1회 참여시 45만원이, 2회 이상 참여시 1회 참여 수당의 1/2이 지급되고, 재결 고지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.

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“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와 관련된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도움을 받아 답답하고 억울함이 없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대상자 명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(www.kmst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개요**

○ **(목적)**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심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 제고

○ **(2023년도 활동 예정자 선정)** 2022년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(478명)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의사 등에 따라 선정

※ 2023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예정자 101명 현황

구분	변호사	해기사		전·현직 공무원			교수 등	합계
		항해사	기관사	조사관	심판관	선박관련		
인원수 (비 율)	47 (46.5%)	12 (11.9%)	1 (1.0%)	8 (7.9%)	25 (24.8%)	4 (4.0%)	4 (4.0%)	101 (100%)

○ **(선정 기준)**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 중 **하나만 해당이 되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검토**하여 운영

- **(직권)** 해양사고관련자가 ① **미성년자**인 경우, ② **70세 이상**인 경우, ③ **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**인 경우, ④ **심신장애** 의심이 있는 경우

- **(청구에 의한 선정)** ①「**국민기초생활 보장법**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수급권자**인 경우, ② 월 소득이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**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**인 경우, 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**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**인 경우, ④ 그 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**(권리보호 필요) 해양사고관련자가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**인 경우, ②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선박직원이 아닌 경우**